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38 발의연월일: 2025. 4. 25.

발 의 자: 박찬대·노종면·유동수

이훈기 · 김윤덕 · 허종식

맹성규 · 임호선 · 이춘석

김용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는, 해당 토지의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처벌 수준이 토양정화 비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, 일부 정화책임자 등은 장기간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, 정화 작업을 악의적으로 중단 및 재개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화의무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도록 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이행강제금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·구청장은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오염토양 정화비용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 한다는 뜻을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 려 주어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, 부과 사유, 납부기한, 수납기관,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, 부과·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⑤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 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·징수하지 못한 다.
- 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1조제 3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화조치 명령 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 다 만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- ⑦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11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명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7조의2(이행강제금) ① 특별자 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·군수·구청장은 제11조제3항
	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오염토양 정 화비용의 100분의 25의 범위에 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
	지 이행경제금을 구파말 구 있다. ①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 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 금을 부과・징수한다는 뜻을
	전화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 어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, 부과 사유, 납부기한, 수 납기관,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 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

써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, 부과·징수 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
⑤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을 한 날을 기 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 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 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 하여 부과·징수하지 못한다.

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미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
⑦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

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 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 니하면 「지방행정제재・부과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